## 개발사업지구(제68조제4항 관련)

- 1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
- 2. 「관광진흥법」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
- 3. 「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 구(2014.04.29. 개정)
- 4. 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
- 5.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8조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
- 6.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
- 7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
- 8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
- 9. 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
- 10. 「온천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
- 11. 「유통단지개발촉진법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
- 12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설치계획 이 수립된 지역
- 13.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
- 14.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
- 15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
- 16.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, 동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
- 17.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철 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및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(2019.03.12. 개정)
- 18. 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8조에 따라 화물터미널설치사업의 공사계획 이 인가된 지역
- 19. 그 밖에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·초지법· 산지관리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·승

인·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